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33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홍기원·김태년·이수진
이소영·권향엽·윤준병
이기현·박정현·김 윤
윤후덕·박민규·문진석
소병훈·안태준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계속하여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급 지역에 따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과 혜택의 내용이 다르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우대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 및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다자녀가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족을 대상으로 교통, 문화, 교육, 주거 및 의료 등의 분야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다자녀 우대카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대상·절차, 운영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0조의2(다자녀가족의 지원) ①</u>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u> <u>녀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u> <u>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u> <u>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u> <u>자녀가족을 대상으로 교통, 문</u> <u>화, 교육, 주거 및 의료 등의</u> <u>분야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u> <u>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u> <u>급·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u> <u>민간 기업·단체 등과 협약을</u> <u>할 수 있다.</u></p> <p><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u> <u>따른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u> <u>·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u> <u>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u> <u>기록·관리 업무를 전자적 방</u> <u>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u> <u>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p> <p><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u>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u> <u>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u></p>

제2항에 따른 다자녀 우대카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대상·절차, 운영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